

대전지방법원 2020. 11. 24 선고 2019나117970(본소), 2019나117987(반소) 판결 [토지인도
건물매수청구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0. 11. 24 선고 2019나117970(본소), 2019나117987(반소)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19. 10. 16 선고 2018가단205718(본소)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 항소인

A 종중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합동

담당변호사 송근명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갑생

변론 종결 2020. 9. 22

판결 선고 2020. 11. 24

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가단205718(본소), 2019가

단101196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와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81,950,8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
반소 청구취지와 같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, 제 1심법원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(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.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

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태영판사 김선용판사 이경희

별지